

정책 설명자료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시행방안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관련-

2009. 10.

기획재정부

■ 목 차 ■

I. 추진 배경	1
II.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안)의 주요내용	2
III. 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5
IV. 추진일정	5

Q & A

1. 채무불이행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데 채권 상환을 제고대책은 ?	10
2. 장학재단채권 발행규모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11
3.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편법이 아닌가 ?	13
4. 향후 많은 재정소요가 예상되는데 그 규모와 조달대책은 ?	14

I. 추진 배경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상환기간 도래시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상환토록 하여 학생·학부모 부담 가중

* 약정 거치기간(평균 5~6년) 종료 후 소득에 관계없이 의무 상환

○ 재학중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에 열중하여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여 성적이 저하되는 악순환 초래

○ 특히 거치기간 중 이자납부를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

* 학자금대출자 중 신용불량자(6개월 이상 원금 or 이자 연체)
: ('06) 670명 → ('07) 3,726명 → ('09.6월) 13,804명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 >

- 대출한도 : 재학중 4,000만원 범위내(연평균 700만원), 생활비 200만원 대출
(기초생보자는 무상장학금 450만원 지원)
- 거치·상환기간 : 각각 최대 10년 (평균 5~6년), 거치기간 종료후 의무적 상환
- 이차보전 : 거치기간 중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
(1~3분위 : 무이자, 4~5분위 : 4%p, 6~7분위 : 1.5%p 이자 지원)
- 재원조달 : 장학재단이 자기자본의 10배이내에서 채권발행하여 직접대출 수행,
다만, 정부는 매년 채권발행액의 1/10을 재정지원 ('09.2학기 1,300억원)

□ (ICL제도 도입) 대학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일정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

* 영·미계 국가의 소득연계 학자금대출제도(Income Contingent Loan)와 동일

○ 재학중은 물론 일정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원금에 대한 상환부담이 없으므로

▪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학업중단 및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가 가능

- 수혜대상의 대폭 확대로 전체 대학생의 절반 가량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 (40만명 → 100만명 내외)
 - 부모소득보다는 수혜자인 학생의 장래소득을 고려하여 지원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에 적합
- (국가보증 필요성) 현재는 대출재원 조달을 위해 장학재단이 자체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 ICL제도 도입으로 대출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채권의 시장소화 가능성과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정부보증이 필요
 - * 대출금리 : '09.1학기 7.3% → '09.2학기 5.8% → '10.1학기 5.5% (잠정)
 - *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보증으로 금리는 0.2~0.3% 인하 예상
 - 특히 정부가 일정규모의 지급준비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고 추후 손실발생시 지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 현행 제도하에서는 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위해 정부에서 발행액의 1/10을 자본금으로 재정지원 (자본금의 10배이내에서 채권발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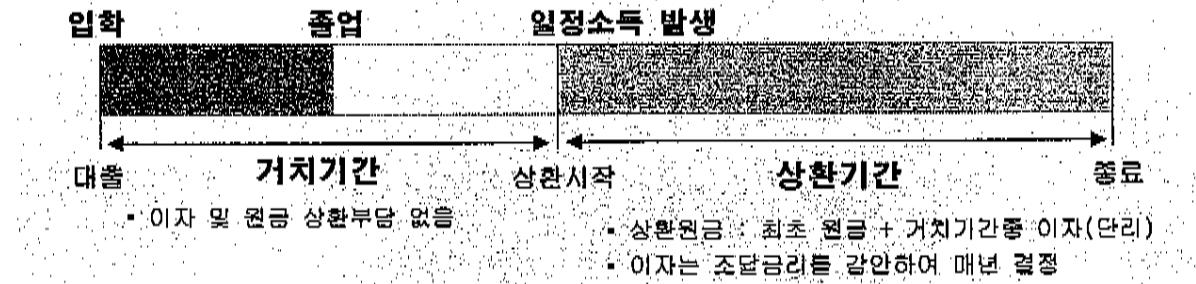
II.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안)의 주요내용

1. 개요

-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10.1학기부터 시행)
- 한국장학재단이 국가보증^{*}으로 재단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재원으로 직접 학자금 대출업무 수행
 - * 한국장학재단법 개정 추진 중 ('09.9.30 국회제출, 교과위 계류)

- 대출자는 일정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다가 일정소득 발생시점부터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
 - 거치기간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시 단리로 원금에 가산

< ICL대출 흐름도 >



2. 세부내용

① 학자금 대출

- (대상) 소득 7분위(연 4,684만원)이하 가정의 대학생
 - * 학점은 현행(O학점) 유지하되, 연령은 체무불이행률을 감안하여 35세이하로 제한
- (대출한도)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생활비 연간 20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200만원 무상지원
 - * 대출금리는 조달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 ('09.2학기 5.8%)

② 대출금 상환

- (상환시점) 연간소득이 기준소득액을 초과한 시점부터 상환
 - 기준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00%(연 1500만원), 상환율은 20%
 - *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상환율 30%

- (부과징수) 국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세청이 원천공제
 - 원리금 미납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고용주는 채무자의 근로소득 지급시 원천공제하여 납부 (미이행시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채무자에게는 고지후 강제징수)

③ 채권 관리

- (미상환자) 졸업후 3년까지 상환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소득 뿐만아니라 재산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출
 - 이후 1년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리금 전액 상환 또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일반대출^{*}로 전환
 - * 상환기간을 정하여 전환시점부터 매년 균등분할 상환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 재산까지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출 (다만, 상환의무는 대출자 본인에게만 부과)
- (해외이주자) 출국 3개월 전까지 사전 신고토록 하고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인을 세운 후 일반대출로 전환
 - * 유학생은 출국 40일전까지 학업계획 ·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보증인을 세움

④ 등록금 인상억제 방안

-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에 대한 정보공시 추진(10.1월 시행)
 - *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 대학의 예·결산 내역공시
-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 (11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적용)

참고**향후 대출 소요재원 추계 [잠정]**

□ 향후 5년간 연간 대출규모는 평균 9.2조원 수준

○ 채권 발행은 연평균 8.7조원 규모로 발행 필요

- 채권잔액은 '20년경에 67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전망

< 중장기 대출규모 및 채권발행 규모(잠정)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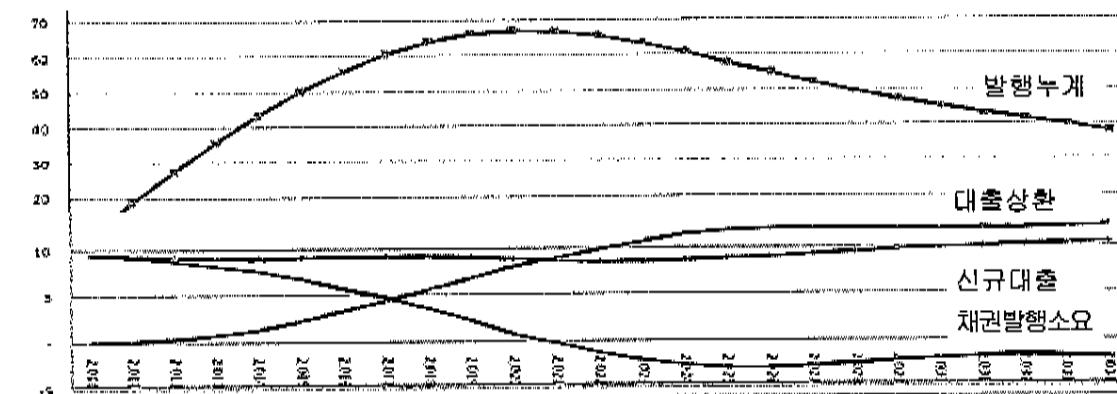
구 분	'10	'11	'12	'13	'14	'20	'21	'25	'30	'34
신규대출(A)	9.4	9.4	9.2	9.0	9.0	8.8	8.6	8.7	9.9	10.4
대출상환액(B)	-	0.2	0.4	0.8	1.3	8.0	8.86	11.7	11.9	12.3
채권발행소요(A-B) ¹⁾	9.4	9.2	8.8	8.2	7.7	0.8	△0.26	△3.0	△2.0	△1.9
채권 잔액	9.4	18.6	27.4	35.6	43.3	67.2	66.9	57.8	45.1	37.9
• ICL대출	6.7	13.6	20.1	27.4	33.9	55.9	55.6	45.3	30.8	21.9
• 일반대출	2.7	5.0	6.8	8.2	9.3	11.3	11.4	12.5	14.3	16.0

* 가정 : 채무불이행률 10%, 물가상승율·등록금인상율 3%, 임금인상율 5%

* 현행 학자금대출 연체율(미납액/상환도래액) : 3.2% ('06~'08년 평균)

1) 차환발행액은 불포함

< 대출규모 및 채권발행규모 추이 >



III. 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 (보증대상)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 채권발행자 : 한국장학재단

□ (보증기간) 채권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

* 통상적으로 3년물 또는 5년물 발행

□ (보증규모) '10년도 대출 소요재원 10조원

○ 대출액은 9.4조원^{*}으로 전망되나 초과수요 감안시 10조원

* 1~7분위 ICL대출 : 6.7조원, 8~10분위 일반대출 : 2.7조원

(단위 : 조원)

구 분	금 액
①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재원 [*] (A)	6.7
②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재원 (B)	2.7
③ 초과수요 감안 (C)	0.6
채권발행액 계 (A+B+C)	10.0

* 전체 대학생 200만명 중 소득 7분위이하(120만명)의 70%(약 84만명)를 가정

※ 근거법령

○ 국가재정법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관계부처 TF에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11월초 발표 예정 → 11월중 특별법안 제출 예정

IV. 추진일정

○ 국가보증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 11.3일

○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제출 (잠정) : 11.5~11.7

별첨1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채무보증을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재원을 조성 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u>채권의 발행액은 재단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u> ④ (생략)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 ② (생략) ③ (삭제) ④ ~ ⑥ 현행과 동일

별첨 2**현행제도와의 비교 (현 제도 VS 신 제도)****□ 현행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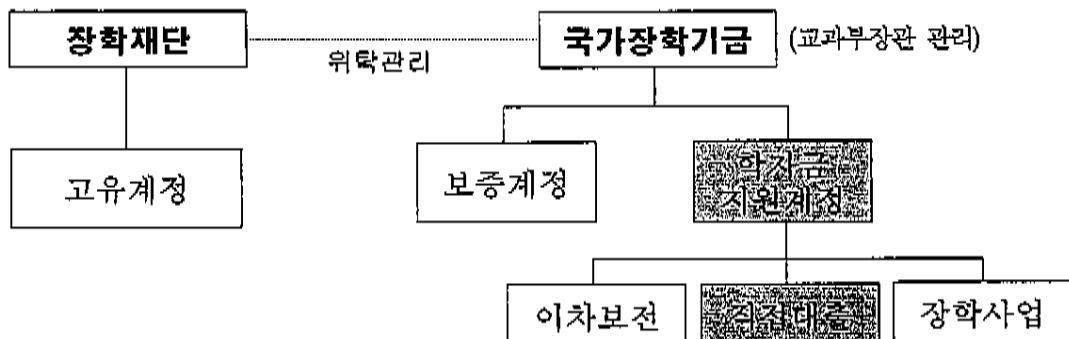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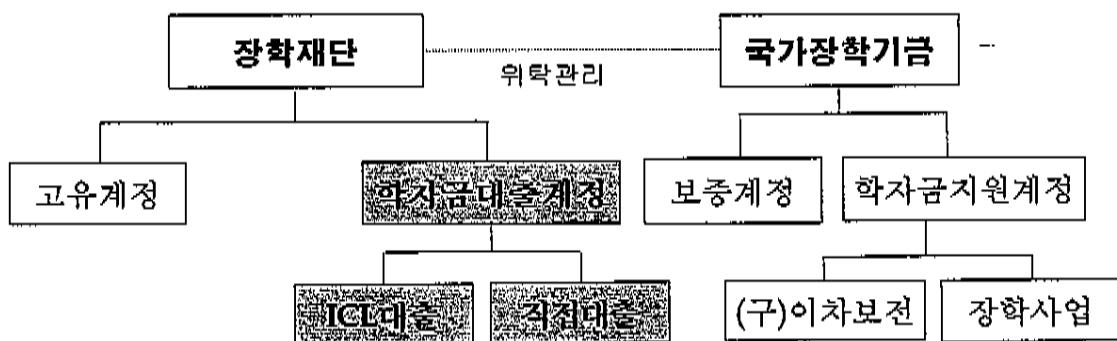
구 分		주 요 내 용
지 원 방 식	이차보전 신용보증 국가장학기금 직접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1학기 이전 : 학생이 은행에서 대출 받고 정부는 이자 일부 보전 '05.2학기 이후 ~ '09.1학기 : 학생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정부가 보증, 이자 일부 보전 '09.2학기부터 : 국가장학기금이 장학재단이 채권발행한 재원을 차입하여 직접대출, 이자 일부 보전 (정부는 장학재단에 자본금 출연)
종 류 별	학 자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생보자 : 450만원 무상 보조 (450만원 이상은 무이자 대출) 1 ~ 3분위 : 무이자 대출 4 ~ 5분위 : 대출 및 이차보전 ($\Delta 4.0\% p$) 6 ~ 7분위 : 대출 및 이차보전 ($\Delta 1.5\% p$) 8 ~ 10분위 : 일반대출 (정부지원 없음)
	생 활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생보자 : 200만원 무이자 대출 1 ~ 3분위 : 200만원 무이자 대출 4 ~ 5분위 : 대출 및 이차보전 ($\Delta 4.0\% p$) 6 ~ 7분위 : 대출 및 이차보전 ($\Delta 1.5\% p$) 8 ~ 10분위 : 일반 대출 <p>* 무상보조 및 무이자 대출시 대출 이자는 정부예산으로 지원</p>

□ 새로운 제도 ('10.1학기부터)

구 分		주 요 내 용
학자금	ICL 또는 일반 대출 - 이차보전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분위는 ICL 대출 / 8~10분위는 일반 대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이차 보전 및 신용보증이 없으므로 정부 예산소요 없음. 다만 상환개시 전까지 정부가 이자 대납
생활비	ICL 또는 일반 대출 - 무상보조 또는 이차보전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생보자 : 200만원 무상보조 1~3분위 : 200만원 무이자 대출 4~5분위 : 200만원 ICL 대출 6~7분위 : 200만원 일반 대출 8~10분위 : 지원 없음 <p>* 무상보조 및 무이자 대출시 대출 이자는 정부예산으로 지원</p>

별첨 3**한국장학재단법 개정 ('09.9.30 국회제출)**

- (현행) 법상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하므로 매년 추가 자본금 출연이 필요 (매년 1조원 이상 소요예상)
- 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한 재원을 **국가장학기금** (관리주체 : 교과부장관)이 차입하여 대출하는 구조
 - * 대출규모 모두가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문제 발생
- (변경) '정부지급보증'을 통한 장학재단 채권발행으로 추가 자본금 출연없이 재원마련 (재원부담 경감)
- ICL 대출 수행주체 변경 : 국가장학기금 → 한국장학재단 (보증채무로서 국가채무에서 제외)

【현행】**【변경】**

Q & A

1. 채무불이행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데 채권 상환율 제고대책은 ?

-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채무불이행률을 낮추고 상환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채무불이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포착 및 강제징수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제도설계를 통해 상환율 제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① 먼저, 국세청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소득포착과 강제징수의 효율적 추진과 대출채권 관리 철저
 - ② 무직자, 전업주부 등과 같이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까지도 합산하여 기준소득을 산정
 - ③ 일정기간 이상 미상환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강제징수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일반대출로 전환
 - ④ 해외로 나가는 경우 출국전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일반대출로 전환
- * 해외유학생의 경우 유학 중에는 학생신분을 인정하여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추후 소득발생시 원리금을 상환
- ⑤ 현재 10년인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안 등 검토

2. 장학재단채권 발행규모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정부지급보증'을 통한 장학채권 발행을 전제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국회제출 ('09.9.30)
- 국가기금이 아닌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발행을 통해 대출재원 마련하여 대출을 시행하며,
 - * 현재 학자금대출은 국가장학기금(관리주체 : 교과부장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대출규모 모두가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문제 발생
- 정부보증을 통한 재원마련이라는 점에서 보증채무이자 불확정 채무로서 국가채무에서 제외됨
 - *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방식과 유사 : 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
- 다만, 일부에서 지적하는 대로 보증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 국제기준도 보증채무를 원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비로소 국가채무로 이행되는 미확정채무로 보고 있으며,
 - 명시적으로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국제적으로 국가채무로 보지 않는 항목까지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경우,
 - 국제비교 가능성과 통계 일관성을 저해하고 국가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참고〉 IMF 정부재정통계(GFS)

- 국가채무는 일반정부(중앙정부 +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

"Only the recognized direct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which are serviced through interest payment and/or redemption should be included in debt."

- 보증채무는 이행청구를 받기 전까지 국가채무가 아님

"Government guarantees of the debts of others should be excluded unless and until the government is called upon to take over and service that debt."

- 공적연금, 사회보장제도의 우발채무 및 보험수리적 부채(잠재적 채무 또는 준비금 부족액)는 국가채무가 아님

"The contingent and actuarial liabilities of government insurance schemes and social security systems are also excluded from the totals of recognized, fixed-term direct government debt."

- 통화당국의 채무는 국가채무가 아님

"The monetary authorities' obligations - for currency issues, for example - are excluded from government debt."

- 공기업 및 정부의 공공금융활동은 정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공기업 등의 채무는 국가채무가 아님

"The debts of public enterprises, outside government, would be excluded, as would the debts of any financial institution functions carried out by government."

- 채무통계는 내부간 거래를 제외한 통합재정기준으로 작성

"Like revenue and expenditure, debt should be shown on a consolidated basis, eliminating from the totals for a single government any debt owed by one part of government to another."

3.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편법이 아닌가?

- 국가보증을 통한 채권발행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도입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 아님
 - 국가보증방식의 효과으로는 ① 현행 대출금리 인하(0.2~0.3%p) 가능, ② 재정부담 경감(채권발행액의 1/10 출연 불필요), ③ 화폐구조 단순화
 - ICL대출을 국가기관이 직접 취급하기보다는 민간재단이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담당함이 보다 효율적임
 - * 시중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정부 재정부담 최소화 가능
 - 同 채무는 동일액의 채권을 수반하는 금융성채무로서, 미상환분에 대해서만 재정이 보충하므로 전액 국가채무로 취급 곤란
 - * 채무불이행률 : 호주 19.5%, 미국 5.2%, 뉴질랜드 1.9%, 영국 1.3% (평균 7.0%)
→ 우리의 ICL 재원소요 추정시 채무불이행률 : 10%를 전제
 - * '09년 학자금대출 연체율(미납액/상환도래액) 실적 : 3.2% ('06~'08년 평균)
 - 국제기준도 보증채무를 명시적으로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음
 -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비로소 국가채무로 이행되는 미확정채무 (IMF 정부재정통계)

4. 향후 많은 재정소요가 예상되는데 그 규모와 조달대책은 ?

- 내년도 소요예산은 약 8,878억원으로 금년과 비교해 볼 때 약 2,500억원이 증가한 수준임
 - 다만, 초기에 상환율이 저조하고, 기존 학생의 무상장학금·이차보전 소요로 인해 증가액이 매년 약 4~5천억원 수준이나,
 -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증가폭은 점차 감소할 전망 ('16년부터 증가폭이 계속 감소)
- 또한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교과부 예산이 약 13조원 수준으로 타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 '09년 교과부 예산(추경포함)은 43.1조원, 지방교부금 제외시 12.7조원
 - 중기재정계획에 추가소요를 반영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중장기 예산소요 >

(억원)

구 분	'09	'10	'11	'12	'13	'14	'16	'18	'20	'25	'30
예산소요	6,330	8,878	14,679	18,194	21,350	24,393	28,283	32,251	33,952	29,404	23,082
전년대비 증가액	-	2,548	5,802	3,519	3,156	3,043	3,890	3,968	1,701	△4,548	△6,322
무상장학금 ¹⁾	2,223	1,817	770	195							
기존이차보전	2,029	2,688	2,984	3,151	2,749	2,296	243	38			
ICL 소계	-	3,395	7,415	11,078	14,613	17,884	23,505	27,461	29,059	23,921	16,877
-대납이자		3,015	6,797	10,293	13,717	16,961	22,526	26,422	27,957	22,644	15,396
-생활비보조		380	618	785	896	923	979	1,039	1,102	1,278	1,481
기타 ²⁾	2,078	978	3,510	3,770	3,988	4,212	4,536	4,753	4,893	5,483	6,205

1) 기초생보자인 기존 재학생은 100% 기존제도 선택을 가정

2) 대위변제 + 기금운영비 등